

폭력시위사건에 관한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는 신문사에 대한 경찰의 수색이 사전통보없이 가능하다고 판결

Zurcher v. Stanford Daily

436 U.S. 547, 98 S. Ct. 1970, 56 L. Ed. 2d 525 (1978)

쥬르처 사건은 1971년 4월 9일 스탠포드대학에서 일어난 폭력시위에서부터 발단되었다. 시위 학생들이 한 구역에서 난동을 부리자 경찰관 9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도 두 명의 신원은 현장에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도주했다. 시위가 있은 지 이틀 후에 스탠포드 데일리지는 시위학생과 경찰관의 충돌에 관한 사진과 기사를 게재했다. 데일리지의 사진기자가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관계당국에 알려졌다. 그 결과로 지방검사는 그 사건의 필름때문에 데일리지의 사무실을 수색하기 위해서 무니시팔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 영장은 평화로운 사무실에 대한 습격과 치명적인 무기에 의한 구타를 입증할 범인의 신원과 증거물이 담긴, 현상이 안되었거나 현상이 된 필름이 데일리지의 건물 구내에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와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발부되었다. 그날 늦게, 신문사 사무실은 몇 명의 신문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의 경찰관에 의해 수색되었다. 그 수색은 단지 데일리지에 이미 보도된 사진들에 한해서만 조사되었는데, 어떤 증거물도 데일리지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1971년 5월에 데일리지와 동지의 몇몇 직원들이 팔로알토 경찰서의 서장(쥬르처), 그 수색을 담당한 경찰관들, 그리고 그 군의 지방검사를 상대로 제소했다. 원고는 미연방의 수정헌법 제 1 조, 제 4 조에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연방지방법원은 그 수색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지지했다. 연방지방법원은, 만약 선서에 근거해서 소환장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정헌법 제 4 조와 제 14 조는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 수색할 영장발부를 금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5.3의 표결결과, 쥬르처 사건과 관련된 신문들(또는 그 문제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이러한 수색이 법정의 영장발급에 의해서 이미 인정된 이상 사전통보 없이도 수색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어떤 범죄혐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사건의 제 3 자」로서, 그들의 재산이 수색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수정헌법 제 4 조의 항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

『부당한 수색과 압수에 반해서, 사람, 가옥, 문서, 부동산을 지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며, 선서 또는 증언에 의해 뒷받침된, 그리고 특별히 수색될 장소,

체포되거나 압수될 사람이나 물건이 명기된 어떤 영장도 상당한 이유를 제외하고 발부될 수 없다.』

뉴스물에 대한 관공리의 수색이나 압수로부터 뉴스 룸과 직원을 보호하려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보호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배척된 비밀성의 또 다른 양상은 주입법과 국가법의 형태인 1980 년 프라이버시 보호조례(Th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것은 1978 년 5 월에 있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뉴스매체에게 언론사의 뉴스 룸과 자료철의 안전이 위태롭다는 경보와 경고의 반응을 보인 후 3 년이 채 못되어서 통과되었다. 미디어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그들의 사무실에 대해 사전통보 없는 수색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재결은 그 믿음을 파괴했다. 뉴스 미디어는 그들의 사무실을 수색한 권리를 인정한 그 법정의 인정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뉴욕타임즈 기자인 워렌 위버가 지적인 바와 같이 소환장의 집행은 「증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증거물을 관계당국에 인도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가진 후에야만 판사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다」. 물론 그 절차는 수색 당한 문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형태의 경고를 받든가 자료철을 정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만약 수색하는 사람이 수색영장을 소지하고 있다면, 증거서류의 소지자는 「문을 노크하는 경고 이상의 경고를 받을 기회가 없다」. 스탠포드 데일리지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 오버트 펙함 지방판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수정헌법 제 4 조의 말(words)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

『그 방법은 제 3 자로부터 증거물을 취득하기 위한 수색영장보다 덜 격렬한 것이 분명하다. 명백하게 소환장의 집행이 수색영장보다 대단히 덜 침입적이다. 즉 경찰이 다만 소환장으로 무장하고서, 가옥, 사무실 또는 책상을 수색하러 가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서 수색결과에 의한 증거물을 제시하기 전에 소환장을 항상 무효화시킬 수 있는데 반해서, 수색을 위한 침입 전에 수색영장에 도전할 기회가 없다.…… 침입정도의 차이와 오판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혐의자들을 위해서 소환장이 수색영장에 우선해서 항상 채택되어야 한다.』

그래서 데일리지의 소송은 미연방지방법원에 의해서 유지되었고, 5 년 후에 미연방항소법원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어쨌든 화이트 판사에 의해서 발표된 판결문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스탠포드 데일리지가 연루된 사건처럼 신문사들이 이러한 사전통보 없는 「사건과 관련된 제 3 자」에 대한 수색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수판단에 속하는 화이트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당 법정 또는 어떤 연방법원도 지방법원이 수정헌법 제 4 조에 철저하게 복귀하도록 하기위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현존하는 법 아래서, 사건에 연관된 제 3 자에 의해서 증거물이 점유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범죄의 결과, 방법, 또는 증거가 발견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어떤 재산을 수색하기 위해서, 정당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수정헌법

제 4 조가 당 법정에 의해서 해석되고 적용된 바와 같이, 유죄증거가 발견될 것이라고 믿는 주정부의 이유가 충분히 클 경우에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정당화되고 그리고 수색과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정당한 수색에 있어서의 비판적인 요소는 재산의 소유자가 범죄혐의를 받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색 당하고 압수당할 특수한 「물건들」이 수색을 위해서 침입되는 재산(소유권)속에 있다고 믿는 상당한 이유이다.』

그 법정은, 수정헌법 제 1 조의 추가적인 요소들이 수색영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반면에 다만 소환장의 집행을 허용한다는 논거들과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신문사의 사무실을 수색하는 것이 언론의 업무수행능력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지한 논거들을 열거하면서, 이것들을 배척했다. 그 논거들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몇 가지 이유들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수색이 적절한 시간에 신문이 발행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까지 물리적인 장애가 아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고갈될 것이고, 언론이 소지한 자료들이 관계당국의 손에 쉽사리 들어갈 것이라는 관여자들의 두려움 때문에, 언론은 역시 다양한 사건들을 취재할 기회를 상실할 것이다. 세째, 만약 이러한 정보가 압수를 당해야 한다면 기자들은 앞으로 그들이 사용할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을 단념할 것이다. 네째, 뉴스의 과정과 그 보급이 수색으로 인해서 편집의 내부적인 방침이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 위축될 것이다. 다섯째, 언론이 경찰과 잠재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의 소유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검열을 강화할 것이다.』

다수의 판단에 속하는 화이트 판사는 이러한 논거들을 물리치면서, 판사가 신문의 발행을 방해할 정도로 침해하는 수색을 경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써곤 마샬과 같이 소수의 판단에 속하는 포터 스투어트 판사는 사전통보 없이 「문을 노크하는(knock-on-the-door)」 침입 대신에 소환장이 신문사로 하여금 어떤 증거자료가 요청되어지고, 그것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브란즈 버거 대 헤이스 사건에서 그가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처럼, 그의 논거는 저널리스트의 정보의 비밀성에 대한 사서적 필요성과 헌법적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오늘날 연방대법원은 이 헌법적 보호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밀성이 요구되는 정보원이 노출되고 영장에 의한 수색의 두려움때문에 언론이 뉴스의 공표를 억제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고 있다. 이런 경솔한 결론은 나에게 일반적인 경험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한다. 만약 정보원이 저널리스트에 대한 신뢰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원이 실질적으로 노출된다면, 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저널리스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정보를 보아 적게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맹목적으로 입으로만 말하는 신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밀적인 정보가 뉴스 룸의 자료철, 캐비닛, 책상 그리고 쓰레기통을 수색함으로써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배척될 수 없다. 이런 수색의

명백함은 기자가 잠재적인 뉴스원에 대해 비밀성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저널리스트와 대중의 정보접근이 자연적으로 손상될 것이 명백하다. 아마 이러한 난해한 정책으로 인해서 신문사의 사무실이 병원이나 은행의 사무실보다 사전통보 없는 경찰수색으로부터 더 적게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소수의 판단에 속하는 존 파울 스티븐 판사는 수정헌법 제 1 조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수정헌법 제 4 조와 충돌하지 않고서 수색영장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스티븐 판사는 미디어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백한 시민에 대한 사전통보 없는 수색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정당성은, 만약 그가 그것을 알아챈다면, 그는 수색의 대상물을 은닉하거나 파괴해야 한다는 두려움 뿐이다. 증거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 또는 그가 범인의 무기, 장물 기타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상당한 이유가 그 두려움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외관이 수정헌법 제 4 조의 조항을 따른다. 그러나 만약 선서에 언급된 내용 중에서 강제적인 사전통보 없는 수색을 위한 영상발부에 필요한 사항을 논증할 내용이 없다면, 상당한 이유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다른 외관적인 합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수색은 수정헌법 제 4 조에 위배된다.』